

도서관법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제137회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1987. 10. 30.

1963. 10. 28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다원화된 도서관의 기능의 수효를 소화하지 못한채 24년이 경과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계인들은 1976년부터 도서관법 개정작업을 착수, 개정안의 작성, 관계기관의 여론조성 등 수십차례에 걸쳐 도서관법 개정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87. 10. 30 제137회 정기국회 11차 본회의에서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종래의 구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도서관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육성을 의무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된 것이다.

이로써 급변하는 정보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도서관의 개념이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되어 도서관 발전의 전환점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도서관인들의 주요관건이 되는 시행령의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도서관법개정법률안의 통과 경위와 관계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도서관 관계인들의 건전한 여론에 동참하고자 한다.